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무직근로자 등(체력단련장) 채용 공고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근무할 공무직근로자 등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20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장

I

채용부문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 직무	채용예정일	근무지역
체력단련장 지원담당 (남자락카)	1명	• 락카/목욕탕 환경미화 및 비품/물품 관리 등 • C/H건물 내외 분리수거 및 화장실 청결유지 • 보일러 가동 및 운영관리 • 이외 사장/팀장이 별도 부여한 직능 수행	'26. 9. 1.	경기 성남
체력단련장 행정 및 여자락카보조	1명	• 행정 업무(예약 및 프런트 관리) 보조 • 락카(여) 및 목욕탕, C/H건물 내외 환경미화 • 기타 관리자(사장·팀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시한 제반 업무 등	'26. 9. 1.	경기 성남

* 채용예정일은 결원 발생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장애인 우대채용

II

근무조건

1. 신분 및 계약기간

채용분야	신분	계약기간	비고
체력단련장 지원담당 (남자락카)	공무직근로자	'26. 9. 1.~정년(만 65세)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근로자(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체력단련장 행정 및 여자락카보조	기간제근로자	'26. 9. 1.~'26. 11. 22.	

※ 수습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미만(공무직근로자 해당)

↳ 수습기간 중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업무수행능력 부족,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2. 근무시간 및 보수

채용분야	근무시간	보수수준	비고
체력단련장 지원담당 (남자락카)	- 주 5일 근무 * 1일 주중휴무, 1일 무급휴무 1일 9시간 *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기본급: 1,886,960원 - 교통비: 130,000원 - 급식비: 160,000원 - 수당(연장, 휴일, 야간) : 11,620원 × 1.5 × 48H(최대) = 836,640원	- 출근 시간 변동될 수 있음 - 주말/공휴일 근무 - 수당(연장, 휴일, 야간)은 최대 48H 내에서 연장, 휴일, 야간 근무 시간에 따라 별도 지급 - 명절상여금, 맞춤형복지포인트 등은 내부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체력단련장 행정 및 여자락카보조	- 주 5일 근무 * 1일 주중휴무, 1일 무급휴무 1일 9시간 *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기본급: 2,017,000원 - 급식비: 160,000원 - 수당(연장, 휴일, 야간) : 10,416원 × 1.5 × 35H(최대) = 546,840원	- 출근 시간 변동될 수 있음 - 주말/공휴일 근무 - 수당(연장, 휴일, 야간)은 최대 35H 내에서 연장, 휴일, 야간 근무 시간에 따라 별도 지급

* 근무 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속근무가 아닐 수 있어, 이로 인해 휴게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 4대 보험 가입(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등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름

III

응시자격

※ 채용절차 진행 중 또는 채용 이후 '결격사유' 식별 시 '채용취소' 가능함을 인지하기 바랍니다.

1. 공통사항 [원서접수 마감일('26. 8. 5.) 기준]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나. 19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 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채용예정일 이전 전역 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 응시가능자 지원 가능

라. 타기관 등 재직자의 경우 채용예정일 전일(前日)까지 퇴직처리가 가능한 자

* 채용예정일 근로계약이 불가한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이는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3.29., 2022.1.4., 2025.1.21.>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바.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사.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4, 2018.10.16, 2021.1.12, 2022.12.27, 2023.4.11., 2024.12.3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우대사항 [원서접수 마감일('26. 8. 5.) 기준]

구분	우대사항						
자격 및 경력 사항	<table border="1"> <thead> <tr> <th>채용분야</th><th>자격요건</th></tr> </thead> <tbody> <tr> <td>체력단련장 지원담당 (남자라카)</td><td> - 신체 건강하고 성실하며 책임감이 강한 자 - 골프장 락카 및 청소업체 근무 유경험자 우대 -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 - 각종 보일러 등 설비업무 유경험자 우대 - 자차 운전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우대 </td></tr> <tr> <td>체력단련장 행정 및 여자라카보조</td><td> - 신체 건강하고 성실하며 책임감이 강한 자 - 해당 업무 유경험자 우대 - 자차 운전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우대 </td></tr> </tbody> </table>	채용분야	자격요건	체력단련장 지원담당 (남자라카)	- 신체 건강하고 성실하며 책임감이 강한 자 - 골프장 락카 및 청소업체 근무 유경험자 우대 -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 - 각종 보일러 등 설비업무 유경험자 우대 - 자차 운전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우대	체력단련장 행정 및 여자라카보조	- 신체 건강하고 성실하며 책임감이 강한 자 - 해당 업무 유경험자 우대 - 자차 운전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우대
채용분야	자격요건						
체력단련장 지원담당 (남자라카)	- 신체 건강하고 성실하며 책임감이 강한 자 - 골프장 락카 및 청소업체 근무 유경험자 우대 -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 - 각종 보일러 등 설비업무 유경험자 우대 - 자차 운전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우대						
체력단련장 행정 및 여자라카보조	- 신체 건강하고 성실하며 책임감이 강한 자 - 해당 업무 유경험자 우대 - 자차 운전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우대						
취업지원 대상자	- 법정 취업지원 대상자: 전형별 만점의 10점 또는 5점 부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기타 취업지원 대상자: 전형별 만점의 5점 부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해당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 법정 취업지원 대상자 및 기타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모두 포함될 경우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적용						

* 취업지원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직종별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 가점 미적용)

IV

시험방법 및 전형일정

1. 시험방법: 1차(서류전형) → 2차(면접시험)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2차 시험: 면접시험

구분	세부내용
1차 서류전형	○ 응시 구비서류와 응시자의 자격요건과 충족여부 심사 ○ 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2배수 이상 5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동점자의 경우 추가 선발)
2차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5대 항목 평가요소 ① 업무에 임하는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의성 ④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⑤ 예의·품행 및 성실성

나. 최종합격자: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합격자로 결정**

2. 전형 일정

전형 일정	일시	비고
시험계획 공고	'26. 7. 20.(월) ~ 7. 31.(금)	•공군 홈페이지(모집공고) •나라일터(일반채용 모집공고) •성남시청(시정소식 새소식) •수정구청(알림마당 새소식)
응시원서 접수	'26. 8. 3.(월) ~ 8. 5.(수)	•등기우편 접수 * '26. 8. 5.(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게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6. 8. 7.(금)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확인 •서류전형 합격자 공군 알림톡 등 개별 문자 발송
면접시험	'26. 8. 10.(월) 예정	•부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장소는 사전 안내
최종합격자 발표	'26. 8월 3주 예정	•최종합격자 공군 알림톡 등 개별 문자 발송
채용예정일자	'26. 9. 1. 부 (사전 통보 예정)	•채용예정일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가.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공군 홈페이지(www.airforce.mil.kr)의 「모집공고」란 게시 또는 **공군 알림톡** 등 개별 문자 발송

나. **서류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채용예정일** 등은 부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합격자에 한해 **공군 알림톡** 등 개별 문자 발송

V

응시원서 접수절차

1. 접수기간: 2026. 8. 3.(월) ~ 8. 5.(수)
2. 접수방법: **우편(등기우편) 접수**(※방문접수 불가)
 - 가.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26. 8. 5.)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나. 응시표는 면접심사 당일 교부 예정
3. 제출주소: 우) 1310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사서함 337-1호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인사행정처 공무원채용담당(☎031-720-3135)
※ [별지 8] 서식에 주소, 성명, 채용분야/신분 기재하여 서류발송 봉투 겉면에 부착
* 봉투규격은 33.5 × 24.5cm(일반서류봉투 규격) 준수

VI

접수서류

제출 서류	제출 시기
1. 응시원서 (별지1 서식) 1부 * 연락처(유선, 휴대전화) 반드시 기재	원서접수
2. 이력서 (별지2 서식) 1부	
3. 서약서 (별지3 서식) 1부	
4.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지4 서식) 1부	
5.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서 (별지5 서식) 1부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6 서식) 1부	
7.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7 서식) 1부	
8. 경력(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소속기관 또는 업체 발행 경력증명서 * 모집분야와 관련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9. 주민등록초본 1부 (병역사항 기재된 것, 남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병역사항" 전체표시	
10.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11.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12.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 또는 채용신체검사서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 발급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접속(www.nhis.or.kr) → (개인)로그인 → 건강모아→ 나의건강관리 → 국가건강검진정보 →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직장제출용)	최종합격자 발표 후

* 구비서류는 순서대로[1번(위) → 11번(아래)] 제출

1. 응시자는 응시자격이 있어야만 응시가 가능하니 응시자격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원서 등의 구비서류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별지 9] 양식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반환됩니다.
* 반환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4. 채용시험 결과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원조사결과, 채용신체검사, 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채용 전 최종합격자가 근로계약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합격자의 차 순위인 사람을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공무원직근로자 등으로 선발(합격)되더라도 추후 정규공무원(군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9.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인사행정처(☎031-720-31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원본)

본인은 ① 2026년도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 아래 기재사항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채용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② 서약자

(서명)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장 귀하

응시번호			
③ 주소			
④ 연락처	☎	(H.P :)	
⑤ 최종학력 (해당자)	년 월	학교 (과 년)	(졸업, 재학, 수료, 중퇴)
⑥ 경 력 (해당자)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부서/직책 :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부서/직책 :		
⑦ 자격.면허증			
⑧ 취업지원대상자 (국가공자 장애인 등 해당자)			
⑨ 군 복무기간	~ (년 월 일)		
⑩ 응시지역	경기 성남		⑭ 사 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3cm×4cm)
⑪ 응시분야 (채용직위)	체력단련장[지원담당(남자락카)/행정 및 여자락카보조]		
⑫ 성 명	(한글)	(한자)	
⑬ 생년월일			

※ 응시 번호	응 시 표			
⑩응시 지역	경기 성남	① 2026년 공군 15비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시험		⑭ 사 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3cm×4cm)
		⑫ 성 명	(한글) (한자)	
		⑬ 생년월일		
⑪응시 분야		20 년 월 일 공 군 제 15 특 수 임 무 비 행 단 장		

응시원서 작성 요령

1. 응시원서는 자필 또는 PC로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작 성 요 령 》

- ① 시 험 명 : 2026년 공군 15비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시험
- ② 서 약 자 : 본인 성명 기재 후, 서명을 한다.
- ③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기재한다.
- ④ 연 락 처 : 연락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 및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한다.
- ⑤ 학 력 : 수학구분 란에는 “졸업, 재학, 수료, 중퇴”로 기재한다.
- ⑥ 경 력 : 본인의 주요 경력사항을 기재한다. (응시자격과 관련되는 경력)
- ⑦ 법령에 의한 자격·면허증 종류를 기재한다.
(채용직위 또는 응시자격과 관련되는 자격·면허증)
- ⑧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증명서상 등급, 번호 등을 기재한다.
- ⑨ 복무기간 : 입영일자부터 전역일자까지를 기재한다.
- ⑩ 응시지역 : 경기(성남) (* 공고문의 근무(예정)지역)
- ⑪ 응시분야 :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응시분야 기재 (* 공고문의 채용분야)
예) 체력단련장 지원담당(남자락카) / 행정 및 여자락카보조
- ⑫ 성 명 : 본인의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되, 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글로 기재한다.
- ⑬ 생년월일 : 본인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 ⑭ 사 진 :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여권용 사진(3.0×4.0cm)
2매를 응시원서(원본)과 응시표에 각각 부착한다.

이 력 서

□ 개인신상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성 별	
현 주 소				
현 소 속	직위(직무) :			
연 락 처	자택	사무실	이동전화	E-mail
병 역	군필여부	군필 () 면제 () 미필 ()		
	최종 계급		복무 기간	OO 개월

□ 직무관련 정보

구 분	내 용
응시분야	체력단련장[지원담당(남자락카) / 행정 및 여자락카보조]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자신의 지식, 경험, 경력 등과 응시 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응시직위에 대한 소견, 응시취지,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등을 간단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자기소개서

주요경력	기 간	소 속	직위(직무)	기 타

현재까지 귀하가 달성한 업적과 장점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최근에 발생한 사건부터 기술하도록 하되, 필요 시 별지 사용이 가능함)

서 약 서

본인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무원/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제반법령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에 대하여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이후에도 외부에 누설하는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규정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지휘·명령을 따른다.
3.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내 각종 시설 및 장비·물품 등을 위법하게 손괴하거나 피해를 유발한 경우 그 책임을 진다.
4. 근무시간 여부를 막론하고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재난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의무를 지니며,
관계 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5. 출·퇴근시간 등 근무와 관련된 제반 기준과 근무 수칙을 준수한다.
6.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 자세로 솔선수범한다.

2026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장 귀하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무원/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제반법령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채용을 위한 신원조사 등에 동의하며, 신속한 조사 결과 도출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 신원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국방부 훈령 제2567호 공무원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14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됨에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 | |
|--|---|
| 1. 피성년후견인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2026 년 월 일

성 명 : (서명/인)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장 귀하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 당 ☐ 비해당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 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해 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해 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 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해 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 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 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 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26 년 월 일

생년월일

지 원 자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공무직/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응시 원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경력, 자격/면허증, 취업지원대상자, 군복무기간 등	채용절차 진행, 경력·자격의 확인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이력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현소속/직위, 연락처, E-mail, 병역사항, 경력사항 등		
기타	신원진술서, 결격사유부존재확인서 경력(재직)증명서(필요시), 최종학력증명서(필요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남자), 면허·자격증명서(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31354호)」에 따라, 채용대상자 신원조사를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u>범죄경력 조회자료 등 신원조사 자료</u>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채용관리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후 180일까지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채용관리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후 180일까지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31354호)」에 따라, 채용대상자 신원조사를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신원조사 기관	채용절차 진행 (신원조사)	신원조사 항목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후 180일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2026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귀중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개경쟁채용	체력단련장 공무원근로자 등
	채용사유		
	現 인원 퇴직에 따른 신규채용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별지 8]

보내는 사람

우]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 응시서류 재중]

채용부분: 공무직근로자 등
「체력단련장」

받는 사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사서함 337-1호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인사행정처 공무직채용담당
(☎ 031-720-3135)

우] 13102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시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2. 당 부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6년 8월 18일부터 2026년 9월 1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부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유선(031-720-3135) 통보 후 이메일(yun25@mnd.go.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당 부대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9월 1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26년 7월 20일

공 군 제 15 특 수 임 무 비 행 단 장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귀중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 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
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